

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

이 상 욱**

< 목 차 >

- I. 서
- II. 인격권편의 체계와 구성
- III. 인격권의 구체적인 유형
- IV. 결

I. 서

우리 민법상 인격권은 다소 생소한 개념에 속한다. 우리 민법전에는 인격권에 관하여 직접 언급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 제751조 제1항, 민법 제752조 제2항, 민법 제764조 등에 인격적 법익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민법전 제정 당시에는 인격권이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일반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¹⁾ 특히 196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처음 사법상의 인격권 개념이 소개되었지만,²⁾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인격권의 침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이외에 “일반 법리”로서 인격권의 이론적인 정립은 구상조차 되고 있지 않았었는데,³⁾ 근래 인격권에 관하여 비교적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⁴⁾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350면.

2) 당시 독일의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인격권에 관한 법리를 소개한, 최종길, “인격권의 사법상 보호 - 독일의 학설 판례의 발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9권 제1호, 1965, 29-35면
이 우리나라에 민법상의 인격권 개념을 처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인격권 범리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은 무엇보다도 판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⁵⁾ 대법원은 출근한 직원에게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적 대우를 한 행위는 그 직원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시한 이래,⁶⁾ 1980년대 이후 인격권은 법원의 실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⁷⁾ 특히 언론, 인터넷, 성희롱 등에 의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의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많은 판례가 나오고 있다.⁸⁾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인격권에 관한 민법개정 논의도 있었다. 2004년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은 민법 제1조의 2 제2항에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당시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⁹⁾ 그 후 인격권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민법전에 규정하자는 유력한 주장이 있었지만,¹⁰⁾ 2013년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에는 인격권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¹¹⁾ 2005년에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인격권을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제5조

3) 양창수, “헌법과 민법”,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1999, 8면.

4) 1998년 민사판례연구회 하계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김재형, “인격권 일반”, 「민사판례연구」 제21권, 박영사, 1999, 631-660면을 비롯하여 김재형,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제33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68-94면; 김재형, 앞의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349-402면; 임미원, “인격권 개념의 기초적 고찰”, 「민사법학」 제3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65-90면; 안병하,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민사법학」 제45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9, 71-122면; 양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 인격권의 구조·성장·분화 -”, 「법과 정책연구」 제11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1139-1165면; 권태상,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법조」 제69권 제1호, 법조협회, 2020, 129-163면 등.

5)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278면.

6) 대판 1980. 1. 15, 79다1883. 이미 1971년 당시 상표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할 수 없는 상표로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또는 인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제10호)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주로 특정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인격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대판 1971. 3. 23, 71후1).

7) 김재형,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제57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41면.

8) 그 자세한 분석과 내용은, 김재형, 앞의 책, 277-389면 참조.

9) 김재형, 앞의 책, 395-398면.

10) 김재형, 앞의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100-102면.

11)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편,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 시안 조문편, 법무부(2013). 인격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751조에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 이외의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도’를 추가하고, ‘금지청구’ 조항(제766조의 2)를 신설하였을 뿐이다.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격권의 민법전 편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지난 5월에 제정된 중국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¹²⁾에는 인격권에 관한 독립된 편을 두고 있다. 즉 민법전 제4편을 「人格權」으로 편성하여 제989조에서 제1039조까지 모두 6개의 章으로 나누어 인격권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민법전 제정과정에서¹³⁾ 인격권의 독립적인 편찬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중국의 학계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쟁이 있었지만,¹⁴⁾ 당시 인격권의 독립 편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王利明 교수¹⁵⁾와 楊立新 교수¹⁶⁾ 등의 논지가 그대로 채택되어 입법화된 것으로 보인다.¹⁷⁾ 이처럼 중국 민법전에 人格權編을 규정한 것은 전 세

12) 2020년 5월 28일 第十三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三次會議에서 통과된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은 총 7編 1260條로 구성되어 있으며 [中華人民共和國 民法典, 人民出版社(2020.6.), 2-236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第四十五號).

13) 중국민법전의 제정에 대하여는 王利明, “중국민법전의 제정”, 「저스티스」 제158-2호, 한국법학원, 2017, 84-110면에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14) 최길자(저)/박설매(역), “중국민법전에 있어서 인격권의 단독편찬 여부에 관한 논의”, 「중국법연구」 제40집, 한중법학회, 2019, 55-78면; 양혜성(저)/최길자(역), “중국 민법전 각칙 편찬과정에 있어서의 쟁점 및 의견충돌”, 「중국법연구」 제42집, 한중법학회, 2020, 29-52면 참조. 인격권의 민법전 편입을 반대하는 견해의 주된 논지는 첫째, 인격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책임으로 법익을 보호하면 충분하고, 둘째, 인격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민법에 규정하게 되면 오히려 인격권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인격권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인격권의 독립적 편찬은 민법전 내부의 논리적 관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인격권의 민법전 규정을 반대하는 대표적 학자로서는 梁慧星, 民法總論(第五版), 法律出版社(2015), 102면; 동, 民法典編纂中的重大爭論 - 兼評全國人大常委會法工兩個民法典人格權編草案, 甘肅政法學院學報 2018年 第3期, 10-11면; 李永軍, 從權利屬性看人格權保護, 法商研究 2012年 第1期, 15면; 韓強, 人格權確認與構造的法律依據, 中國法學 2015年 第3期, 147-150면; 尹田, 人格權獨立性編的再批評 比較法研究 2015年 第6期, 3-4면 등 참조.

15) 특히 王利明 교수는, 인격권은 방어적 성격의 권리로서, 「간단한 人格權의 類型 列舉 + 불법행위책임(侵權責任) 방식」의 입법 양식만으로도 인격권 보호에 충분하다는 독립적인 인격권 편 설정에 반대하는 견해에 대하여, 이제 인격권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특징을 가진 권리로서 오히려 입법을 강화하여 민법전에 독립된 편성 규범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王利明, 人格權的屬性: 從消極防禦到積極利用, 中外法學 2018年 第4期, 845면.

16) 楊立新 교수는 특히 중국 역사상 ‘문화혁명’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경험하였던 점을 강조하며, 인격권의 독립된 편찬을 주장하였다. 楊立新, 人格權立法中國經驗的解讀與定型, 東方法學 2018年 第5期, 5-7면.

17) 인격권의 민법전 독립편찬을 주장하는 견해의 주된 논지는, 인격권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권리자의 자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제3자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으며, 재판 실무에서의 기준을 통일하고 법관의 자유재량을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王利明, 民法典人格權草案的亮点及完善, 中國法律評論 2019年 第1期(總 第25期), 96-108면; 王利明, 人格權法的新發展與我國民法典人格權編的完善, 浙江工商大學學報 第6期

계의 인격권 발전에 있어서 매우 창의적인 의미가 있으며,¹⁸⁾ 인격권 보호는 민법의 기본임무라는 점에서도 중국 민법전의 중요한 특색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⁹⁾

사실 인격권에 관한 내용이 민법전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1986년에 제정된 민법통칙(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을 비롯하여 일부 특별법에도²⁰⁾ 인격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²¹⁾ 특히 民法通則을 공포한 후에는 명예권에 관한 분쟁이 대거 발생하였으며, 재판 실무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中國最高人民法院은 23개의 명예권에 관한 司法解釋이나 회신(回函)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²²⁾ 그런데 이번 민법전에서는 독립적인 인격권편을 설정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래에서는 중국 민법전²³⁾에 규정된 인격권의 내용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⁴⁾ 구체적인 인격권 내용의 자세한 법리와 심도 있는 분석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넘기고, 아래에서는 먼저 민법전에 규정된 인격권의 체

(總 第159期, 2019年 11月), 5-19면; 楊立新, 앞의 ‘人格權立法中國經驗的解讀與定型’, 東方法學 2018年 第5期, 4-13면; 楊立新, 民法典人格權編草案邏輯結構的特点與問題, 東方法學 第2019年 第2期, 4-15면; 劉凱湘, 民法典人格權編幾個重要理論問題評析, 中外法學 2020年 第4期, 2-10면.

18) 楊立新, 我國民法典人格權立法的創新發展, 法商研究 2020年 第4期(總第198期), 19면.

19) 王澤鑑, 中國民法的特色及解釋適用, 法律適用, 2020年 第13期, 11-13면.

20) 1992년에 제정된 「부녀권익보장법(中華人民共和國婦女權益保障法)」에도 제6장 「人身權利」에서 「부녀의 명예권·영예권·프라이버시권·초상권 등의 인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동법 제42조)」고 규정하였으며, 1993년 제정된 「소비자권익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消費者權益保護法)」에도 경영자가 소비자의 인격 존엄을 침해한 때에는 침해의 정지 및 명예회복과 영향의 삭제를 비롯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21) 즉 민법통칙 제5장 「民事權利」 제4절 「人身權」에는, 公民은 생명건강권(동법 제98조), 성명권(동법 제99조), 초상권(동법 제100조), 명예권(동법 제101조), 영예권(동법 제102조), 혼인자주권(동법 제102조)을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 후 2017년 개정된 민법총칙(中華人民共和國民法總則)은 제5장 「民事權利」에서 자연인의 자유와 인격 존엄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동법 제109조), 자연인은 생명권·신체권·건강권·성명권·초상권·명예권·영예권·프라이버시권(隱私權)·혼인자주권 등의 권리를 향유하고(동법 제110조 제1항),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非法人組織)은 명칭권·명예권·榮譽權 등의 권리를 향유한다(동법 제110조 제2항)고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제정된 불법행위법(中華人民共和國侵權責任法)에 의하면, 민사권익을 침해한 때에는 불법행위책임(侵權責任)을 부담하게 되는데, 민사권익이란 생명권·건강권·성명권·명예권·영예권·초상권·프라이버시권·혼인자주권 등의 인신권익을 지칭한다고 하였다(동법 제2조).

22) 王利明, 人格權法(第二版), 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6), 275면.

23) 이하 민법전 또는 민법이라 함은 2020년 5월 28일 제정된 중국 민법전을 지칭한다.

24) 민법전에 규정된 인격권 규범의 중요한 가치는 사회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 중국 헌법(中華人民共和國憲法)에 그 토대를 둔 것이라고 하는데(張翔, 民法人格權規範的憲法意涵, 法制與社會發展 2020年 第4期, 119면), 인격권의 헌법적 의미와 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계와 구성(Ⅱ)을 살펴보고, 이어서 인격권의 구체적인 유형(Ⅲ)에 따라 인격권 편에 규정된 내용을 분석·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인격권편의 구성

1. 인격권편의 체계

이번에 제정된 민법전은 총 7편(제1편 총칙, 제2편 물건,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불법행위책임)인데, 그 중 제4편이 인격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合同(계약)編” 다음 “婚姻家庭編” 앞에 위치하며, 불법행위책임(侵權責任)과는 별개의 독립된 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사실 인격권의 이와 같은 민법전상의 위치는 종래 王利明 교수가 주장한 바 있다. 2005년 발표된 王利明 교수의 “中國民法典學者建議稿及立法理由 人格權編·婚姻家庭編·繼承編”에 의하면 인격권을 “婚姻家庭編” 앞에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⁵⁾ 민법전의 이와 같은 인격권의 위치는 논리적으로 보면 현저하게 이상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아마도 민법편찬자는 민감한 부분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임시적인 조치로서 배정된 것이라고 보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즉 재산권 앞에 규정함으로써 “先人後物”의 인문주의 정신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인격권편은 민법전의 가장 앞부분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⁶⁾ 또한 인격권 규정의 구체성과 민법총칙의 추상성은 서로 호환성이 없으므로 인격권의 모든 내용을 민법총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²⁷⁾

사실 민법 제1편 총칙 제5장 “民事權利” 제109조는 “자연인의 人身自由와 人格尊嚴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0조는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유권 등의 권리를 향유한다. 법인, 법인 아닌 단체(非法人組織)는 명칭권, 명예권

25) 王利明, 中國民法典學者建議稿及立法理由, 法律出版社(2005), 1-191면.

26) 石佳友, 人格權立法的進步與局限 - 評《民法典人格權編草案(三審稿)》, 民商法學 2020年第1期, 18면.

27) 王利明, 論民法總則不宜全面規定人格權制度 - 兼論人格權獨立性編, 現代法學 2015年 第3期 82-92면; 馬俊驅, 關於人格權基礎理論問題的探討, 法學雜誌 2007年 第5期, 6면.

과 영예권을 향유한다”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격존엄”은 일반 인격권을 의미하고,²⁸⁾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私權化하여 민사권리의 기본을 규정한 것으로서 인격권을 민법의 가치이념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한다.²⁹⁾ 또한 민법전의 인격권편은 제1편 총칙 제130조³⁰⁾가 규정하고 있는 자아결정권을 포함하여 일반 인격권과 공개권³¹⁾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완전한 추상적인 인격권 체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³²⁾ 반면에 민법전 인격권편은 공법적 규범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를 적용하는 법관들은 헌법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³³⁾

민법전상의 인격권은 모두 6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역시 그 근간은 이미 2005년 王利明 교수가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 듯하다.³⁴⁾ 그 후 王利明 교수는 구체적인 인격권의 내용을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인신자유권, 성명권, 명칭권, 초상권, 명예권, 신용권,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권으로 수정하였는데,³⁵⁾ 민법전에 규정된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³⁶⁾

2. 일반조항(제989조-제1001조)

제1장 일반조항(一般規定)은 모두 13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 먼저 “본편은

28) 楊立新,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中國法制出版社(2020), 82면.

29) 王澤鑾, 앞의 논문, 11면.

30) 민법 제130조 : 민사주체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법에 의하여 민사권리를 행사하며, 간섭을 받지 않는다.

31) 공개권이란 인격적 이익의 상업적 이용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뒤에 설명하기로 한다.

32) 楊立新, 앞의 ‘我國民法典人格權立法的創新發展’, 20면.

33) 張翔, 앞의 논문, 119면.

34) 당시 王利明 교수가 제안한 인격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제3장 성명권, 제3장 성명권, 명칭권, 초상권, 제4장 명예권, 신용권, 영예권, 제5장 자유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유권, 제6장 기타 인격권의 의로 되어 있었다. 王利明, 앞의 ‘中國民法典學者建議稿及立法理由’, 15-192면. 인격권의 민법전 규정을 주장한 또 다른 학자로서 楊立新 교수는, 인격권을 추상적 인격권(일반 인격권, 自我決定權, 公開權)과 구체적 인격권으로 구분하고, 구체적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성명권, 명칭권, 초상권, 形象權, 音聲權, 명예권, 신용권, 영예권, 신체자유권, 프라이버시권, 性自主權, 혼인자유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楊立新, 人格權法, 法律出版社(2011), 249-666면.

35) 王利明, 앞의 책, 147-360면; 同, 人格權法研究(第三版), 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8), 255-650면.

36) 江平教授는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生命權·健康權·身體權·人身自由權·婚姻自主權·姓名權·名稱權·肖像權·名譽權·私生活保護權·榮譽權으로 분류하고 있다. 江平(지)/노정환 외(역), 「중국민법」, 삼성경제연구소, 2007, 518-554면.

인격권의 향유 및 보호와 관련된 민사관계를 조정한다”고 규정하여(제989조), 제4편 인격권편의 규율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인격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격권이란 “민사주체가 향유하는 생명권·신체권·건강권·성명권·명칭권·초상권·명예권·영예권·프라이버시권 등을 의미한다(동조 제1항).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이외에 자연인은 신체의 자유(人身自由)³⁷⁾와 인격의 존엄성에 기초한 기타 인격권익을 향유한다(동조 제2항)”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제989조 제2항은 일반 인격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핵심 내용은 인격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 인격권이 창출되는 기능(새로운 인격권의 창출)과 해석기능(구체적인 인격권의 내용 해석) 및 보충기능(인격적 법익이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인 인격권의 보호)이 파생하게 되며, 특히 실제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보충기능으로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인격의 존엄성으로부터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³⁸⁾

그리고 민사주체의 인격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제991조), 권리주체의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으며, 상속이 되지 않는 권리이다(제992조).³⁹⁾ 그렇지만 자연인을 비롯하여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는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및 초상 등의 인격적 이익⁴⁰⁾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데(제993조), 이는 곧 인격적 이익의 公開權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권이란 상품화할 권리, 즉 인격적 이익의 상업적 이용권을 의미한다.⁴¹⁾

또한 사망한 자의 성명이나 초상·명예·영예·프라이버시·유해 등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는 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기타 근친이

37) 人身自由는 구체적인 인격권을 의미하고, 人格自由는 일반적인 인격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한 법률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인신자유는 인격자유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楊立新/李怡雯, 人格自由與人身自由區別及價值, 財經法學 2019年 第4期, 16-29면.

38)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694면.

39) 이 조항은 인격권의 고유한 권리 속성을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楊立新, 위의 책, 695면. 반면에 이 조항은 헌법상의 기본권리 포기(Grundrechtsverzicht)의 원리를 언급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張翔, 앞의 논문, 125면.

40) 제993조는 성명, 명칭, 초상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에도 음성, 개인정보 등의 인격적 이익을 포괄한다고 해석한다.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696면.

41) 즉 인격권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한 것이라고 한다. 程嘯, 論《民法典》對人格權中經濟利益的保護, 新疆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20年 第6期, 141-143면.

침해자에게 민사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994조)고 규정하여 사망한 자의 인격권도 보호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⁴²⁾

특히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침해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민사책임으로서, 피해자의 침해정지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위험제거청구권, 영향해소청구권, 명예회복청구권, 사과청구권(賠禮道歉請求權)은 출소기간⁴³⁾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제995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행위(違約行爲)로 인하여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됨으로써 중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채무불이행책임(違約責任)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996조).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쌍방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행위가 발생하여야 하며, 셋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침해됨과 동시에 채권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어 중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⁴⁴⁾ 민법전 제7편 불법행위책임(侵權責任) 제2장(損害賠償) 제1183조는 「자연인의 人身權益이 침해되어 중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데,⁴⁵⁾ 이 규정은 일반조항이고, 위 제996조는 특별조항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효력이 있다.⁴⁶⁾

인격권 침해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인격권이 침해되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 권익이 보완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인민법원에 침해의 정지 등 관련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997조).⁴⁷⁾ 이는 인격권법의 독특하고도 독창적인 제도로써 손해 예방 기능에

42) 이 경우 근친이란 제2순위의 친족으로서 형제자매와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등을 의미한다.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697면.

43) 중국민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멸시효가 아니라 소송시효(출소기간)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民法典 第一編 總則 第九章 訴訟時效(제188조-제199조). 소송시효는 권리자가 권리의 사실 상태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법정 기간을 경과한 경우, 소송절차에 따라 의무자에게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시효제도이다. 江平, 앞의 책, 435면.

44)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698면.

45) 우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재산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6)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698면.

일조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⁴⁸⁾ 이 규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입법상의 불비라는 지적이 있다. 첫째, 침해행위의 금지 청구가 착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담보책임 부담하게 하도록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게는 인민법원이 금지 명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과 둘째, 침해행위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민사소송상의 강제이행 제도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⁴⁹⁾

생명권·신체권·건강권⁵⁰⁾ 이외의 인격권(예컨대 성명권, 명칭권, 초상권, 음성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와 피해자의 직업·영향력의 범위·과실 여부·행위의 목적과 방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998조).⁵¹⁾ 공공이익을 위한 신문 보도 등의 언론은 민사주체의 성명이나 명칭·초상·개인정보 등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격권 침해행위는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제999조), 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로 인해 야기된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영향의 삭제, 명예회복, 사과(賠禮道歉) 등의 민사책임을 부담한다(제1000조 제1항). 침해자가 민사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에 공고를 내거나 재판 문서를 공포하는 방식 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하게 된다(제1000조 제2항). 끝으로 혼인관계나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신분 보호에 관하여는 민법전 제1편(총칙)⁵²⁾과 제5

47) 이는 영미법상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訴前禁令)제도를 규정한 것으로서, 진일보한 입법이라고 평가한다. 王利明, 論侵害人格權的訴前禁令制度, 財經法學 2019年 第4期, 13면.

48) 王利明, 앞의 논문, 14-15면.

49)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國民法典 條文要義’, 699면.

50) 민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생명권, 건강권, 신체권 등이 침해되어 인신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실손해를 비롯하여 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었다(最高人民法院 《關於審理人身損害賠償案件適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제17조 제1항). 朱曉娟 主編, 人身權編, 中國民主法制出版社(2008), 2-3면; 國家法官學院案例開發研究中心編, 中國法院 2018年度案例 人格權紛糾, 中國法制出版社(2018), 1-96면.

51) 인격권 침해의 유형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物質性人格權(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등)과 精神性人格權(성명권, 명칭권, 초상권, 음성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히 행위자와 피해자의 직업이나 과실 여부 행위의 목적과 방식 및 결과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國民法典 條文要義’, 699면.

52) 민법 제112조 : 자연인의 혼인 가정관계로 발생한 人身權利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편(혼인가정) 및 기타 법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편 인격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제1001조).

Ⅲ. 인격권의 구체적인 유형

1. 생명권 · 신체권 · 건강권(제1002조-제1011조)

자연인이 향유하는 생명권 · 신체권 · 건강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느 누구로부터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다(제1002조, 제1003조, 제1004조). 자연인의 생명권 · 신체권 · 건강권이 침해당하거나 위협에 처한 경우에 법정 구조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신속하게 구조할 의무가 있다(제1005조).

민법에 생명권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생명권은 자연인의 생명 안전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至高無上性의 가장 중요한 인격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고유성 · 전속성 · 절대성이 있으며, 임의로 박탈할 수 없고 불법적으로 제한할 없다는 점에서 삭감이 불가능한 권리이고, 모든 생명권은 평등하며, 생명은 사회 공공이익과 관계되고 사회의 가장 귀중한 재산으로서 일정한 공익성을 지닌다.⁵³⁾ 생명권이란 생명이 있는 주체가 법에 근거하여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가장 근본적인 人身權이라는 주장도 있다.⁵⁴⁾

신체권 역시 그 의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자기의 신체 조직 기관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그 지체 · 기관과 기타 조직을 지배하는 권리라고 한다.⁵⁵⁾ 신체권의 특징으로서는, 자연인만 향유할 수 있고(주체의 특정성), 권리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고유성), 신체와 그 구성 부분 및 신체의 완전한 이익을 포함하여(권리객체의 2중성), 권리자가 법률이나 사회 공공이익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 신체의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내용의 유한 지배성), 절대권으로서 강한 배타성을 가진다(절대성).⁵⁶⁾

53) 王利明, 앞의 ‘人格權法’, 149-151면.

54) 江平, 앞의 책, 518면.

55) 楊立新, 앞의 ‘人格權法’, 391면.

건강권도 동일하게 해석상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데,⁵⁷⁾ 일반적으로 건강권이란 자연인이 그 신체의 생리기능의 지속·안정·양호한 심리상태의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생리기능과 양호한 심리상태설).⁵⁸⁾ 건강권의 특징은, 주체가 자연인에 한한다는 점, 객체는 생리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포함한다는 점, 독립적 인격권이라는 점이다.⁵⁹⁾

이어서 신체 조직의 매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신체의 세포·조직·기관·유해 등은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가 금지되고,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제1007조). 그렇지만 완전민사행위능력자⁶⁰⁾는 신체의 일부나 유해를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데 기증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유언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제1006조 제1항). 본인이 생전에 신체 일부의 기증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망한 뒤 그 배우자와 성년자녀 및 부모는 공동으로 기증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역시 그 방식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1006조 제2항). 이 역시 민법 제130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아결정권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⁶¹⁾

그리고 인체의 임상실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예방 및 치료 방법 등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체에 관한 임상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고 윤리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험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실험의 목적과 용도 및 발생 가능한 위험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줄 고지의무가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제1008조 제1항),⁶²⁾ 이 경우 임상실험자는 실험 대상자에게 임상실험의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동조 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가능한 임상실험의 범위는 신약 및 새로운 의료기계의 연구제작, 새로운 예방방법이나 치료방법의 발전 등으로 제한되고, 이와 같은 법정 범위를 초

56) 王利明, 앞의 '人格權法', 230-232면.

57) 예컨대 건강이익설, 건강기능완전성설, 생리기능과 양호한 심리상태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楊立新, 앞의 '人格權法', 368면.

58) 王利明, 앞의 '人格權法研究', 320면.

59) 王利明, 앞의 '人格權法', 255-258면.

60) 중국 민법상 18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년자(成年人)로서(제17조), 완전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하여 민사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제18조).

61)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06면.

62) 후일에 발생할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인체 실험의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구두 동의는 효력이 없다.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08면.

과하는 임상실험은 모두 위법한 행위로서 임상실험 대상자의 신체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⁶³⁾ 또한 유전자나 인체배아 등과 관련된 의학과 과학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법률이나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강에 해를 가하거나 윤리도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공공이익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1009조).

뿐만 아니라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민법전 인격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의사에 반해 언어나 문자 및 영상이나 신체행위 등으로 성희롱(性騷擾)을 한 경우,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010조 제1항), 기관이나 기업 및 학교 등은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고발 접수, 조사 처분 등을 통하여 직권이나 종속관계 등을 이용한 성희롱을 방지하고 제지하여야 한다(제1010조 제2항). 성희롱의 규제에 관한 입법주의로서 제1010조 제1항은 성희롱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권리보호주의를 취한 것이고, 제2항은 성희롱 행위의 제재를 위주로 한 직장보호주의를 채택한 것으로서, 중국은 권리보호주의를 주로 하고 직장보호주의를 보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⁶⁴⁾ 끝으로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내용으로서,⁶⁵⁾ 불법 구금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행위를 하거나, 신체를 불법으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민사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1조).

2. 성명권과 명칭권(제1012조-제1017조)

자연인은 성명권을 향유하므로, 법에 따라 성명을 결정·사용·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지만, 공사양속에 위반하여서는 안된다(제1012조). 이처럼 성명권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결정권으로서, 자연인은 자기의 성명을 결정할 수 있는 命名權을 의미한다. 둘째 사용권으로서, 자연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셋째 변경권으로서, 자연인은 자기의 성명을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통상 이름을 변경하게 되지만 성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성명을

63)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08면.

64)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09면.

65)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10면.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된 성명을 등기하여야 한다. 넷째 타인이 자신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컨대 委託代理⁶⁶⁾나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정당한 허가를 받고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이 된다.⁶⁷⁾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非法人組織)는 명칭권을 향유하며, 이 역시 법에 따라 명칭의 결정·사용·변경·양도할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지만(제1013조), 어느 누구도 타인의 성명권이나 명칭권을 간섭·도용·사칭 등의 방식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제1014조). 이 경우 간섭이란 자연인이 행사하는 命名權·사용권·변경권 및 허가에 대하여 강제로 간섭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처럼 타인의 성명권과 명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는 법정무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권이나 명칭권을 침해하게 되면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⁶⁸⁾

명칭권은 성명권과 달리 공서양속에 의한 제한 규정이 없으며, 특히 다른 인격권과 크게 다른 점은 명칭권을 전부 양도하거나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명칭권을 전부 양도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업무도 일괄하여 양도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그 명칭과 업무 일체를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명칭권 양도의 절대양도주의라고 한다.⁶⁹⁾

자연인의 성명 결정과 변경 및 법인과 법인 아닌 단체의 명칭 결정과 변경 및 양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련된 기관에 등기하여야 하고(제1016조 제1항), 자연인이나 법인 등 민사주체가 성명이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성명이나 명칭을 변경하기 전에 한 법률행위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성명권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자녀의 姓에 대한 내용을 인격권 편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연인은 父나 母의 성을 따라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제3의 성도 선택할 수 있다(제1015조 제1항).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으로서는 첫째, 다른 직계 연장자 혈족의 성

66) 委託代理란 被代理人(본인)의 위탁수권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로서(江平, 앞의 책, 474면), 수권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대리인의 성명이나 명칭, 대리사항, 권한과 기한, 피대리인의 서명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민법 제165조.

67)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11면.

68)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13면.

69)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12면.

을 선택할 수 있다(동조 제1항 제1호). 예컨대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성이 부모의 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법정 부양의무자 이외의 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그 부양자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동조 제1항 제2호). 예컨대 부모 이외의 자로부터 장기간 부양을 받고 있으면서 아직 입양 관계는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양자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제3자의姓을 선택할 수 있다(동조 제1항 제3호). 이를테면 본가의 원래 성씨가 “蕭”인데 착오로 간략하게 “肖”라고 정한 때에는 다시 “蕭”씨 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⁷⁰⁾ 또한 소수민족은 민족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 민족의 문화적 전통과 풍속 및 관습에 따라 성을 결정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예컨대 몽고족처럼 이름만 사용하고 성이 존재하지 않는 소수민족은 그 문화 전통과 관습에 따라 성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¹⁾

끝으로 필명이나 예명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즉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어서 타인에 의하여 혼동될 수 있는 필명이나 예명·인터넷상의 닉네임(网名)·번역명·字號 또는 성명이나 명칭의 약칭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성명권과 명칭권의 보호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제1017조). 그 요건으로서는 첫째, 일정한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魯迅이나 金庸과 같은 필명처럼 상당한 지명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둘째, 그 명칭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예컨대 “北方工業大學”이나 “北京交通大學”을 “北大”라고 부른다면 北京大學와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⁷²⁾

3. 초상권(제1018조-제1023조)

자연인은 초상권을 향유하며, 법에 따라 자신의 초상화를 제작·사용·공개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제1018조 제1항), 초상이란 영상·조소·회화 등의 일정한 방식으로 매체상의 반영을 통하여 특정한 자연인이라고 식별될 수 있는 외부 형상을 의미한다(제

70)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13-714면.

71)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14면.

72)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15면.

1018조 제2항).

초상은 개인의 외부 형상 표지이며, 자연인만 초상권을 향유할 수 있고(個體性), 주로 자연인의 얼굴 특징 및 그 재현이 되며(面部性), 개인의 얼굴 특징은 각종 기술 수단을 통하여 재현할 수 있으며(再現性), 초상의 주체는 반드시 실재적인 개인이어야 하고 가상적인 사람이 아니며(客觀性과 可識別性), 일종의 인격 표지로서 초상인과 다른 사람을 서로 구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초상인의 인격 존엄과 인신 이익을 구현한다(人格性)는 특징을 지닌다.⁷³⁾

초상권의 내용은 저작권, 사용권, 공개권, 타인 사용 허가권을 포괄한다. 즉 권리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셀카(自拍) 등 다양한 예술 표현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초상을 제작할 수 있고, 자신의 초상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초상을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자는 자신의 초상 사용을 통하여 또는 타인에게 자신의 초상 사용을 허가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⁷⁴⁾ 다만 그 계약 내용이 공서양속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것이어야 한다(제993조).

개인의 초상화를 희화화(丑化)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또는 정보기술(IT) 방법 등을 통하여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제 1019조 제1항), 초상 작품의 권리자는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 발표·복제·발행·대여·전시 등의 방법으로 초상권자의 초상화를 사용하거나 초상권자의 초상을 공개할 수 없다(제1019조 제2항). 그런데 이 규정은 인체 모델의 초상권 문제와 초상권자가 사망한 후의 보호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체 모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초상권자가 사망한 후 10년이 경과하면 초상 저작권자는 제994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⁷⁵⁾

다만 아래에 열거한 행위는 초상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제1020조). ① 개인의 학습이나 예술 감상 또는 학교에서의 수업이나 과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자가 이미 공개한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동조 1호). ② 신문 보도를 위하여 초상권자의 초상화 제작·사용·공개가 불가피한 경우(동

73) 王利明, 人格權法, 248-249면.

74)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16면.

75)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18면.

조 2호). ③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기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사용·공개하는 경우. ④ 특정한 공공의 환경을 전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초상권자의 초상화를 제작·사용·공개하는 경우.⁷⁶⁾ ⑤ 공공이익이나 초상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상권자의 초상을 제작·사용·공개하는 등 기타 행위. 이를테면 실종자를 찾기 위하여 초상화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권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된다.

초상의 사용을 허가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초상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며(제1021조), 초상을 허가하는 사용 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언제든지 초상 허가 사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22조 제1항). 또한 초상 허가 사용 기간이 명확하게 약정된 경우에는 초상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초상 허가 사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초상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제1022조 제2항).

성명 등의 사용 허가에 대하여는 초상 사용 허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며, 음성권도 보호 대상으로 하여 자연인의 음성에 대한 보호는 초상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다(제1023조).

4. 명예권과 영예권(제1024조-제1031조)

(1) 명예권

명예란 민사주체의 인품과 덕망·평판·재능·신용 등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고(제1024조 제2항), 민사주체는 명예권을 향유하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 등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수 없다(제1014조 제1항). 즉 명예권은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 아닌 단체 등이 자신의 속성과 가치에 대해 획득한 사회적 평가에 대하여 향유하는 구체적인 인격권이다.⁷⁷⁾ 명예는 법률상 개념으

76) 예컨대 천안문 성루 사진을 찍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행자들을 화면에 담는 경우를 의미한다.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19면.

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명예는 사회적 평가의 일종이고(사회성), 개인적인 자아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객관성), 특정한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하는 특정한 주체의 사회적 평가이며(특정성), 그 표현 형식은 관념적인 형태를 띠게 되며(관념성), 명예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⁷⁸⁾ 또한 명예는 명예감을 포함하지 않는다. 명예감이란 자연인이 자기의 내적 가치(예컨대 소질·소양·사상·품행·신용 등)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객관적 평가로서의 명예와 어떠한 주체 내심의 일종의 감정인 명예감은 구분되는 개념이다.⁷⁹⁾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실 명예권은 이미 민법총칙 등 특별법에 일부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민법전에 규정된 내용은 명예권의 보호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선언함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명예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즉 공공이익을 위하여 신문에 보도하거나 여론 감독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타인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제1025조),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동조 제1호)와 타인이 제공한 심각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동조 제2호) 및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동조 제3호)에는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행위자가 제1025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도 명문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내용 출처의 신뢰도(제1026조 제1호), 논란이 될 만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가 명확하게 진행되었는지의 여부(동조 제2호), 내용의 시급성(동조 제3호),⁸⁰⁾ 내용과 공서양속의 관련성(동조 제4호), 피해자의 명예훼손 가능성(동조 제5호), 조사확인 능력과 조사확인 비용(동조 제6호)⁸¹⁾ 등이 타인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지의 여부를 조사 확인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77)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22면.

78) 楊立新, 앞의 '人格權法', 505면.

79) 王利明, 앞의 '人格權法', 278-280면.

80) 예컨대 제 때에 보도하지 않으면 대중의 알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24면.

81) 구체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언론은 분명히 할 수 없을 것이며, 검증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때에는 언론에 꼭 확인하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이다.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24면.

또한 문학 예술 작품이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행위자가 발표한 문학 예술 작품이 실화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묘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면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1027조 제1항), 다만 그 문학 예술 작품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내용만 해당 특정인의 경우와 유사할 뿐일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동조 제2항). 또한 신문이나 인터넷 등의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증명되면 해당 매체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1028조).

신용권의 침해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민사주체는 자신의 신용평가를 조회할 수 있고, 그 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사는 즉시 검증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029조). 권리주체가 자신의 신용평가를 조회한 경우에 신용조회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신용평가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수정을 요구하면 신용평가사는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정확하게 결론을 도출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은 禮를 중시하고 신용을 지키는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仁義禮智信”을 강조하여 왔지만, 최근 100년 사이에 도덕과 誠信의 질서가 파괴되어 誠信道德과 誠信秩序를 회복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한다.⁸²⁾

(2) 榮譽權

영예란 특정한 민사주체가 사회활동에서 두드러진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에 정부나 일정한 권위를 가진 조직이 부여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⁸³⁾ 영

82)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26면.

83) 江平, 앞의 책, 552면; 영예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명예권과 구별된다. 첫째, 성질이 다르다. 명예권은 전형적인 인격권이지만, 영예는 모든 공민과 법인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평가가 아니고, 국가와 사회 조직 등이 사회활동에 특수한 공헌이 있는 특정한 공민 또는 법인에게 부여하는 美名이나 칭호이다. 둘째, 객체가 다르다. 영예권은 국가나 사회 조직이 어떠한 주체에게 수여하는 영예 칭호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이지만, 명예권은 주체가 품행·능력 등의 영역에서 양호한 사회적 평가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이다. 셋째, 취득 방법이 다르다. 영예권은 주체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의 노동과 공헌에 따라 국가 기관 또는 사회 조직을 통하여 수여된 후에 비로소 취득할 수 있지만, 명예권은 그 주체가 출생하거나 성립할 때에 향유하는 것이고, 주체가 일정한 행위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예권은 민사주체가 획득한 영예 및 그 이익을 향유하고, 지배하며 유지하고 보호(維護)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격권이다.⁸⁴⁾ 민사주체는 영예권을 향유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영예 칭호를 불법적으로 박탈해서는 안되며, 타인이 영예를 훼손하거나 폄하해서는 안된다(제1031조 제1항). 영예 칭호를 취득한 자에 대한 기재가 누락 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이를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취득한 영예 칭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5.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제1032조-1039조)

(1) 프라이버시권

프라이버시권은 자연인이 향유하는 인격권으로서,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사생활을 정탐하거나(刺探), 침범하여 소란을 피우거나(侵擾), 누설하거나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없다(제1032조 제1항), 프라이버시란 자연인의 사생활의 안녕과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공간, 사적 활동, 사적인 정보를 의미한다(제1032조 제2항). 특히 프라이버시(隱私)는 첫째 “隱”이고 둘째 “私”가 되는데, 전자는 권리자가 타인이 알게 되도록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지칭하고, 후자는 공공이익이나 공동체의 이익과 관계없는 순수한 개인적인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의 주된 내용은 첫째,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숨기고 타인에게 알리지 않을 권리며, 둘째, 정신적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며, 셋째,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향유하는 지배권은 공서양속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⁵⁾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끝으로 소멸방법이 다르다. 명예권은 주체의 인격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일단 상실된다면 주체의 독립된 인격은 계속해서 존재하기 어렵지만, 영예권은 주체가 영예권을 향유하지 않더라도 그 주체 자격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王利明, 앞의 ‘人格權法’, 282면.

84)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28면. 반면에 영예권은 인격권이 아니라 일종의 신분권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王利明, 앞의 ‘人格權法’, 282면.

85)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29면.

(제1033조). 즉 법률의 규정이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실행할 수 없는 행위로써, ① 전화, 문자, 메신저(即時通訊工具), 전자우편, 전단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사적인 생활안녕⁸⁶⁾을 침해하여 소란을 피우는 행위(동조 제1호), ② 타인의 주택, 호텔 방 등 밀폐된 사적 공간에 진입하거나 촬영하거나 엿보는 행위(동조 제2호), ③ 타인의 사적인 비밀 활동을 촬영하거나, 엿보거나, 도청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동조 제3호), ④ 타인 신체의 비밀부위를 촬영하거나 엿보는 행위(동조 제4호), ⑤ 타인의 사적인 정보(私密信息)를 처리하는 행위(동조 제5호),⁸⁷⁾ ⑥ 기타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동조 제6호)⁸⁸⁾를 규정하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데(제1034조 제1항), 개인정보란 전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개별적으로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특정한 자연인의 성명·생년월일·신분증 번호·생체인식 정보·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건강 정보·행적 정보 등을 의미한다(동조 제2항). 총칙편 제5장 민사권리의 제111조는 “자연인의 개인정보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⁸⁹⁾ 이에 상응하여 본 조항은 먼저 자연인의 개인정보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개인정보 개념의 내용과 외연을 구분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취급이란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저장·가공·전송·제공·공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제1035조 제2항),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필요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86) 王利明 교수는 개인의 생활안녕권(Right to life tranquility)은 일종의 私權이며,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프라이버시권과 분리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반드시 민법전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王利明, 生活安寧權：一種特殊的隱私權, 中州學刊 2019年 第7期, 46-54면.

87) 처리란 타인의 사적인 정보를 획득하거나, 삭제·공개·매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는 모두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30면.

88) 제6호 규정은 일반조항(兜底條款)으로서, 타인의 사적인 정보, 비밀 활동, 비밀 공간, 생활안녕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31면.

89) 제111조의 개인정보권의 내용은 점유권·결정권·보호권·알 권리(知情權)·更正權·잊음권(銷定權)·잊혀질 권리(被遺忘權)를 포괄한다.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84면.

때에는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즉 ①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연인 또는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⁹⁰⁾ ② 정보처리 규칙을 공개할 것, ③ 취급하는 정보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를 명시할 것, ④ 법률이나 행정법규 및 쌍방이 약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또한 합리적인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① 해당 자연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② 해당 자연인이 스스로 공개하거나 또는 이미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다만 해당 자연인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그 정보 처리로 증대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제외됨), ③ 공공이익 또는 그 자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민사책임이 면책된다(제1036조).

개인정보권자가 향유하는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서⁹¹⁾, 자연인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1037조 제1항), 필요한 경우에는 삭제할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동조 제2항). 그리고 정보취급자의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정보취급자는 수집·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안되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정보의 유출 및 조작이나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변조·분실되었다면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1038조). 또한 국가기관이나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법정 기관과 그 실무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자연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불법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비밀유지의무가 있다(제1039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995조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⁹²⁾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은 공법과 사법의 종합적인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규제권에 관한 내용도 자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⁹³⁾

90) 이는 개인정보의 ‘自我決定’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엄격하게 당사자의 동의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하게 구현할 수 없으며, 사회변화의 추세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謝遠揚, 《民法典人格權編(草案)》中“個人信息決定”的規範建構及其反思, 民商法學 2020年 第4期, 10-15면.

91)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34면.

92) 楊立新, 앞의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736면.

IV. 결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도 상당수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전 제정 당시에 인격권의 독립된 편성을 반대했던 학자들이 민법전 제정 후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격권의 독립된 편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학자들의 평가는 상당히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즉 중국 민법전에 인격권을 독립하여 편성하게 된 중요한 목적은, 인격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인격권 보호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중국 인민 대중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⁹⁴⁾ 특히 모든 인격권을 전면적으로 확인하면서, 인격권의 法定化와 開放性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인터넷과 첨단 기술의 발달에 부응하여 새로운 인격 이익의 보호 규칙을 추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권 보호 방법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⁹⁵⁾

「明者因時而變 知者隨事而制(충명한 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책략과 방법을 바꾸고 지혜로운 자는 사물의 다름에 따라 자신의 관리방법을 정한다. 桓寬의 鹽鐵論)」는 가치를 들고, 신시대의 새로운 노정에 응하여 민법전의 편찬 역시 시대와 함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현 단계에서 인격권을 독립적으로 편성하여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길이요 중요한 조치라고 하여⁹⁶⁾ 제정된 민법전 인격권의 자세한 규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는지는 지켜볼 과제라고 본다.

투고일 : 2020.11.3. / 심사완료일 : 2020.12.8. / 게재확정일 : 2020.12.23.

93) 劉士國, 關於人格權法理三點探析, 法治研究 2020年 第4期, 54-55면.

94) 王利明, 論人格權保護的全面性和方法獨特性, 財經法學 2020年 第4期, 4면.

95) 王利明, 앞의 논문, 7-10면.

96) 王利明, 앞의 '民法典人格權編草案的亮点及完善', 108면.

[참고문헌]

- 江平(저)/노정환 외(역), 「중국민법」, 삼성경제연구소, 2007.
-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박영사, 2012.
- 권태상,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법조」 제69권 제1호, 법조협회, 2020.
- _____, “인격권 일반”, 「민사판례연구」 제21권, 박영사, 1999.
- _____,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인권과 정의」 제339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 _____, “인격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민사법학」 제27호, 한국민사법학회, 2005.
- _____, “인격권에 관한 입법제안”, 「민사법학」 제57호, 한국민사법학회, 2011.
- 안병하,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민사법학」 제45권 제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9.
- 양창수, “헌법과 민법”, 「민법연구」 제5권, 박영사, 1999.
- 양천수,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 인격권의 구조·성장·분화 -”, 「법과 정책연구」 제11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1.
- 양혜성(저)/최길자(역), “중국 민법전 각칙 편찬과정에 있어서의 쟁점 및 의견충돌”, 「중국법연구」 제42집, 한중법학회, 2020.
- 王利明, “중국민법전의 제정”, 「저스티스」 제158-2호, 한국법학원, 2017.
- 임미원, “인격권 개념의 기초적 고찰”, 「민사법학」 제3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
- 최길자(저)/박설매(역), “중국민법전에 있어서 인격권의 단독편찬 여부에 관한 논의”, 「중국법연구」 제40집, 한중법학회, 2019.
- 최종길, “인격권의 사법상 보호 - 독일의 학설 판례의 발전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9권 제1호, 1965.
- 國家法官學院案例開發研究中心編, 中國法院 2018年度案例 人格權紛糾, 中國法制出版社, 2018.
- 劉凱湘, 民法典人格權編幾個重要理論問題評析, 中外法學 2020年 第4期.
- 劉士國, 關於人格權法理三點探析, 法治研究 2020年 第4期.
- 馬俊驅, 關於人格權基礎理論問題的探討, 法學雜誌 2007年 第5期.
- 謝遠揚, 《民法典人格權編(草案)》中“個人信息決定”的規範建構及其反思, 民商法學 2020年 第4期.
- 石佳友, 人格權立法的進步與局限 - 評《民法典人格權編草案(三審稿)》, 民商法學

2020年 第1期.

梁慧星, 民法總論(第五版), 法律出版社, 2015.

——, 民法典編纂中的重大爭論 - 兼評全國人大常委會法工兩個民法典人格權編草案, 甘肅政法學院學報 2018年 第3期.

李永軍, 從權利屬性看人格權保護, 法商研究 2012年 第1期.

韓強, 人格權確認與構造的法律依据, 中國法學 2015年 第3期.

尹田, 人格權獨立性編的再批評 比較法研究 2015年 第6期.

王利明, 中國民法典學者建議稿及立法理由, 法律出版社, 2005.

——, 人格權法(第二版),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6.

——, 人格權法研究(第三版),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8.

——, 論民法總則不宜全面規定人格權制度 - 兼論人格權獨立性編, 現代法學 2015年 第3期.

——, 人格權的屬性: 從消極防禦到積極利用, 中外法學 2018年 第4期.

——, 民法典人格權草案的亮点及完善, 中國法律評論 2019年 第1期.

——, 人格權法的新發展與我國民法典人格權編的完善, 浙江工商大學學報 2019年 第6期.

——, 生活安寧權: 一種特殊的隱私權, 中州學刊 2019年 第7期.

——, 論侵害人格權的訴前禁令制度, 財經法學 2019年 第4期.

——, 論人格權保護的全面性和方法獨特性, 財經法學 2020年 第4期.

王澤鑑, 中國民法的特色及解釋適用, 法律適用, 2020年 第13期.

楊立新, 人格權法, 法律出版社, 2011.

——, 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 條文要義, 中國法制出版社, 2020.

——, 人格權立法中國經驗的解讀與定型, 東方法學 2018年 第5期.

——, 民法典人格權編草案邏輯結構的特点與問題, 東方法學 第2019年 第2期.

——, 我國民法典人格權立法的創新發展, 法商研究 2020年 第4期.

楊立新/李怡雯, 人格自由與人身自由區別及價值, 財經法學 2019年 第4期.

張翔, 民法人格權規範的憲法意涵, 法制與社會發展 2020年 第4期.

程嘯, 論《民法典》對人格權中經濟利益的保護, 新疆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20年 第6期.

朱曉娟 主編, 人身權編,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08.

[국문초록]

중국 민법전상의 인격권*

이 상 욱**

인격권의 민법전 편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2019년 5월에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중국 민법전(中華人民共和國民法典)에는 인격권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민법전 제4편을 「人格權」으로 편성하여 제989조에서 제1039조까지 모두 6개의 章으로 나누어 인격권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민법전 제정과정에서 인격권의 독립적인 편찬 여부에 대하여는 그동안 중국의 학계에서도 이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논쟁이 있었지만, 당시 인격권의 독립 편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王利明 교수와 楊立新 교수 등의 논지가 그대로 채택되어 입법화된 것으로 보인다.

민법전상의 인격권은 모두 6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일반규정(제989조 - 제1001조), 제2장 생명권, 신체권과 건강권(제1002조 - 1011조), 제3장 성명권과 명칭권(제1012조 - 1017조), 제4장 초상권(제1018조 - 1023조), 제5장 명예권과 榮譽權(제1024조 - 제1031조), 제6장 프라이버시권(隱私權)과 개인정보보호(제1032조 - 제1039조)이다.

중국 민법전에 인격권을 독립하여 편성한 중요한 목적은 인격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인격권 보호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중국 인민 대중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중국 민법전에 人格權編을 규정한 것은 전 세계의 인격권 발전에 있어서 매우 창의적인 의미가 있으며, 인격권 보호는 민법의 기본임무라는 점에서도 중국 민법전의 중요한 특색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민법전 인격권 규정에 상당수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민법전 인격권편의 자세한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규정들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현되는지는 지켜볼 과제라고 본다.

주제어 : 인격권, 중국인격권, 중국민법, 생명권, 초상권

[Abstract]

The Personal Rights in the Chinese Civil Code

Lee, Sang-Wook*

Unlike Korea, which is passive in incorporating personal rights into the civil code, the Chinese Civil Code, which was enacted in May 2019, has detailed regulations on personal rights. The fourth section of the Civil Code is organized as “Personal Rights” and is divided into six sections, from Articles 989 to 1039, to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on personal rights. Although there have been arguments in China’s academic circles for and against the independent compil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ourse of the enactment of China’s Civil Code, the opinions of scholars who strongly advocated the independent compilation of personal rights at that time seem to have been adopted and legislated.

The personal rights of civil law are composed of six chapter. Chapter 1 is general regulation (§989 - §1001), Chapter 2 right of life, right of physical and health (§1002 - §1011), Chapter 3 right of name and title (§1012 - §1017), Chapter 4 right of portrait (§1018 - §1023), Chapter 5 right of honor (§1024 - §1031), and Chapter 6 privacy rights and privacy regulations (§1032-§1039).

The important purpose of organizing personal rights independently in the Chinese Civil Code is to realize the beautiful happy life of the Chinese people’s masses by full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and realizing the spirit of personal rights protection.

As such, the stipulation of personal rights in the Chinese Civil Code has a very creative meaning in the development of personal rights around the world,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is also pointed out a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Chinese Civil Code in that it is the basic duty of civil law.

* Professor, Law School, Yeungnam University.

Key words : personal rights, Chinese personal rights, Chinese Civil Code,
right of portrait, right of life